

2021년도 제1회 봉화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도 제1회 봉화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봉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1·2차 병합)	시험시간
일반직 9급	시 설	일반토목	4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60분
	방송통신	통신기술	2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60분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문항당 1분 기준)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성적순으로 차례로 선발하여 시설(일반토목)직렬은 6명 까지, 방송통신(통신기술)직렬은 4명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및 제66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거주지 제한

- 2021년 제1회 봉화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공고일 전일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나.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계급	직 령(직 류)	해당 학력 및 자격(면허)증
9급	시 설(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계급	직 렬(직 류)	해당 학력 및 자격(면허)증
9급	시 설 (일반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방송통신 (통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다. 성별·연령 : 성별은 제한 없음/연령은 만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 표	비 고
2021.8.30.~9.1 (3일간) ※취소마감일 9.3	필기시험	2021.9.6.(월)	2021.9.11.(토)	2021.9.13.(월)	
	면접시험	2021.9.13.(월)	2021.9.15.(수)	2021.9.29.(수)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8. 30(월) ~ 9. 1(수) ※ 접수시간 : 09:00~18:00

나. 접수장소 : 봉화군청 총무과 행정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총무과 행정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9. 1.) 소인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라.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5,000원)을 환불해 드립니다.

마.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붙임 서식) 1부(사진2매, 봉화군수입증지 인증 포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봉화군 수입증지 인증)-봉화군청1층 민원실

※ 우편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②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서식)

6. 가산점 적용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3명이하를 선발하는 방송통신직렬은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의사상 대상자 가산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이번 시험에는 미적용(10명이하 모집)

7. 기타 유의사항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되며, 5년 후에도 봉화군 자체 기준에 따라 전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2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채용 서류를 반환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된후에도 제출서류 내용 허위기재, 임용결격사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40%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경우 및 총점의 60%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합니다.

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시험일정을 변경하여 재공고합니다.

카.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총무과(054-679-6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시설9급, 방송통신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⑥ 봉화군수입증지란에는 **봉화군 수입증지(5,000원)**를 게첨
(구입처 : 봉화군 1층 민원실)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5,000원)로 교환하여 동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봉화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	-------------------------------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인사위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